

'98 소방관계법령 행정규제 정비

□ 현 황

규제 내용

행정자치부는 '98 규제개혁추진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,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소방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.

주요 정비내용

- 소방관련업과 관련한 각종 면허, 인가, 신고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,
-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위험물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소방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
- 특히, 소방관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를 년 2회에서 1년 1회, 화재위험도가 낮은 곳은 2~3년에 1회로 축소하여 건축주 또는 방화관리자에 의한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, 민원처리 및 소방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부조리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키로 하였다
- 그동안 대국민 규제로 인식되어온 소방행정규제 총174건 중 67건을 폐지하고 50건을 개선하는 등 117건을 과감히 정비하여 '98년내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

⇒ 향후에도 대국민 소방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편의 증대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

되는 각종 소방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,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.

소방법령 규제완화 추진내용

□ 총괄표

규제 총수	정비			존치
	소계	폐지	개선	
174건	117(67.2%)	67(38.5%)	50(28.7%)	57

□ 과제별 정비내용

- 신고·인가제 및 소방관련업제도 등 일반제도분야 81건 (폐지 45건, 개선 36건)
-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기준 14건 (폐지 8건, 개선 6건)
- 위험물안전관리분야 22건 (폐지 14건, 개선 8건)

□ 법령별 정비사항

- 소방법 개정사항 55건 (폐지 34건, 개선 21건)
 - 1) 특수장소의 불필요한 소방교육 폐지 (제8조의 3)
 - 2) 특수장소 관계인의 소방교육 폐지 (제8조의 4)
 - 3)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기간 완화 (제9조 제4항)
 - 4) 방화관리자 해임 신고 폐지 (제9조 4항 후단)
 - 5) 공동방화관리규정 제정 폐지 (제10조 제1항 후단)
 - 6) 위험물의 임시저장·취급기간 완화 (제15조 제1항)

- 7)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완화 (제16조 제2항 제2호)
- 8) 위험물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기간 완화 (제16조 제3항)
- 9)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변경 (제18조 제1항)
- 10)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 지정 폐지 (제18조 제1항)
- 11)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한 완화 (제18조 제2항 제3호, 제5호)
- 12)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기간 폐지 (제20조 제5항)
- 13)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시 즉시 선임의무 완화 (즉시→30일 이내) (제20조 제1항)
- 14)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및 관리범위 완화 (제20조 제1항 제5호)
- 15)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폐지 (제20조 제7항)
- 16)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폐지 (제20조 제7항)
- 17) 일부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폐지 (제20조 제7항)
- 18) 위험물시설안전원 고용의무제 폐지 (제21조 제1항)
- 19) 소방시설점검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 (제33조 제1항)
- 20)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제한 완화 (제34조 제3호, 제5호)
- 21)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신고의무 폐지 (제35조)
- 22)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(제37조)
- 23) 소방시설점검업의 소방시설관리사만 책임토록한 제한 폐지 (제38조 제4항)
- 24)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제한 완화 (제39조 제3호, 제5호)
- 25) 소방용수시설 지정 폐지 (제43조)
- 26) 소방용수시설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폐지 (제43조 제2항)
- 27) 소방용기계·기구 등의 수거·교체·폐기 등 명령권 폐지 (제50조 제5항)
- 28) 소방용기계·기구 등의 형식승인 취소절차 개선 (제50조의 3 제1항)
- 29) 소방용기계·기구 등의 형식승인 재신청 금지기간 폐지 (제50조의 3 제2항)
- 30) 성능합격 표시와 유사표시 금지 폐지 (제50조의 4 제3항)
- 31)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선 (제52조 내지 제54조, 제57조, 제58조, 제61조, 제109조, 제112조)
- 32)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제한 완화 (제54조 제3호, 제5호)
- 33)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제 폐지 (제55조 제1항)
- 34) 소방시설공사업 합병인가제 폐지 (제55조 제1항 후단)
- 35) 소방시설공사업 상속신고 폐지 (제55조 제3항)
- 36) 소방시설공사의 도급한도액제를 폐지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로 개선 (제59조)
- 37)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설비기사 시공관리 책임 폐지 (제64조 제1항)
- 38) 소방시설 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대상 설정 개선 (제61조의 2 제1항)
- 39) 소방설비기사의 이종취업금지 폐지 (제64조 제2항)
- 40)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 (제65조의 2 제1항)
- 41) 소방시설설계·감리의 수수료 제정고시 폐지 (제65조의 2 제3항)
- 42)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제한 완화 (제65조의 3 제3호, 제5호)
- 43) 소방설계업자의 건축사와의 협의 폐지 (제65조의 4)
- 44) 감리보조자 배치의무 폐지 (제65조의 4 제3항)
- 45)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폐지 (제65조의 4 제6항)
- 46) 선언적인 유사 소방신호 사용금지 폐지 (제66조 제2항)
- 47) 화기취급·사용제한 폐지 (제67조 제2항,

제68조)

- 48) 화재경계지구 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의무 폐지 (제69조 제2항)
- 49) 화재통지방법의 선언적 조항 폐지 (제71조 제2항)
- 50) 관제인 등의 소화의무에 대한 선언적 조항 폐지 (제72조 제2항)
- 51) 급수유지의 긴급조치의무 폐지 (제80조)
- 52) 청원소방원제도 폐지 (제92조)
- 53)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인회원 의무가입제 폐지 (제99조 제2항)
- 54)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기관 복수 허용 (제105조)
- 55)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(제119조)

○ 소방법시행령 정비사항 16건 (폐지 8, 개선 8)

- 1) 건축허가·사용승인 동의기간 개선 (제4조 제4항)
- 2) 소방·방화시설 등의 종류중 피난시설 종류제한 완화 (제4조의 3 제1호 나목)
- 3)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면제대상 확대 및 훈련횟수 완화 (제5조의 2)
- 4) 2급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(제9조 제2항 제9호 내지 12호)
- 5) 고이동방화관리의 허용범위 확대 (제8조)
- 6)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·취급량 확대 (제15조 제2호 가목)
- 7) 예방규정을 정하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대상 축소 (제22조)
- 8) 대량위험물저장소의 자체소방대 훈련횟수 폐지 (제23조 제5항)
- 9) 동력소방펌프 설치대상 폐지 (제28조 제6항)
- 10) 누전경보기 설치대상기준 폐지 (제29조 제3항 제1호)
- 11)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기준 폐지 (제29조 제5항)
- 12) 소화수조 설치대상기준 폐지 (제31조 제2항)
- 13) 청원소방원 관련규정(제복착용의무) 폐지 (제46조)
- 14) 청원소방원 관련규정(기본교육의무) 폐지 (제47조)

- 15) 한국소방안전협회 임원규정 정관에 위임하고 폐지 (제59조)
- 16)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위탁기관 확대 (제63조)

○ 소방법시행규칙 정비사항 33건 (폐지 21, 개선 12)

- 1) 특수장소 소방검사 횟수 완화 (제3조 제2항, 별표1)
- 2) 특수장소의 소방교육 및 훈련결과 기록부 보관의무 폐지 (제3조의 2 제4항)
- 3) 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제외범위 확대 (제6조 제2항)
- 4) 대량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위탁전문업체의 지정요건 중 장비보유기준 폐지 (제9조의 2, 별표1의 3)
- 5)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 제한 폐지 (제10조의 4 제7항)
- 6)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점검종류 구조안전점검으로 단일화 (제10조의 5 제1항, 별표2의 2)
- 7)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결과 중 일반점검결과 폐지하고 자체 보관 (제10조의 5 제4항)
- 8)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지정요건 중 장비보유기준 완화 (제19조의 2)
- 9)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영업범위 제한 폐지 (제19조의 3 제1항)
- 10)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변경지정 폐지 (제19조의 2 제3항)
- 11)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 신고의무 폐지 (제19조의 3 제3항)
- 12)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원 지정 관리의무 폐지 (제19조의 3, 행자부고시1998-48호 제6조)
- 13)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폐지 (제22조)
- 14) 소방시설자체점검증 위탁점검의무 완화 (제29조 제3항)
- 15) 소방시설자체(위탁)점검후 봉인·검인부착의무 폐지 (제29조 제2항)
- 16)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 보관의무 폐지 (제29조 제5항)

- 17) 소방시설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완화 (제30조)
- 18) 소방시설점검업 휴·폐업 등의 신고 폐지 (제34조)
- 19)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요건 완화 (제3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)
- 20)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부정행위자 재응시자격제한 폐지 (제42조)
- 21)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업무 시설기준 폐지 (제56조, 별표8)
- 22)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변경 신고사항 범위 축소 (제64조의 제3항)
- 23) 소방시설공사업 휴업·재개업·폐업 등의 신고 폐지 (제64조 제3항)
- 24)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사실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평가제 및 공시제 도입 (제65조)
- 25)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 신고기간 완화 (제66조의 2 제2항)
- 26) 소방공사감리결과서 통보 및 결과보고서류 간소화 (제69조의 7 제2항 제1호, 제2호)
- 27)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를 폐지하고 변경신고로 통합하여 개선 (제69조의 8)
- 28)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휴업·재개업·폐업의 신고 폐지 (제69조의 9)
- 29) 청원소방원 관련규정(배치현황신고) 폐지 (제73조)
- 30) 청원소방원 관련규정(근무감독권한) 폐지 (제75조)
- 31) 청원소방원 관련규정(신분증 휴대의무) 폐지 (제76조)
- 32) 청원소방원 관련규정(관리장부 비치의무) 폐지 (제77조)
- 33) 방화관리자 등의 자격수첩 등에 실무교육수료사항 기재 등 가능기관 확대 (제90조)

○ **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정비사항 10건 (폐지 2, 개선 8)**

- 1) 다중이용업소의 비상벨, 비상방송설비기준 완

화 (제143조의 2 제1호 다목)

- 2) 위험물 품명별 공동저장기준 완화 (제275조 제1항 제1호)
- 3) 위험물 옥내저장기준 폐지 (제275조 제1항 제2호)
- 4) 위험물 옥외저장소의 위험물저장기준 폐지 (제275조의 제1항 제11호)
- 5)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대상 완화 (제2조 제1항, 별표4)
- 6)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
 - 옥내소화전설비 수조내 조명시설 설치의무 폐지 (제5조 제6항 5호)
 - 옥내소화전설비 적색등 기준 폐지 (제8조 제3항 제3호)
- 7)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·기준 개선
 -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옥외가스 주입구 설치의무 폐지 (제51조 제3항)
 -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배관기준 완화 (제61조 제2호)
 - 분말소화설비 배관기준 완화 (제68조)
- 8) 아파트 피난기구 설치의무 중 공기안전매트 설치대상의 완화 (제100조 제2항 제2호)
- 9)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중 대형피난구 유도등 설치의무 완화 (제103조의 2, 표 가, 나호)
- 10)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 완화 (제135조 제1항 제1호)

○ **소방용품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개정사항 1건 (개선)**

- 소방용기계·기구 등의 성능시험시설 구비·심사제도 개선 (제8조 제1항, 별표1)

○ **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업무범위에관한고시 2건 (폐지)**

- 1)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운영규정 제정 폐지 (행정자치부고시 1998-48호 제6조)
- 2)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업무 휴·폐업 신고기간을 단축 (행정자치부고시 제1998-48호 제7조)